

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최찬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2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17.
발의자 : 최찬규 의원 외 13인

1. 개정이유

- 안산시 실정에 맞게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3조)
-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 및 대표위원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~ 제6조)
-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결산검사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결산검사의 협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 안 제13조)

3. 개정조례안 : 불임 1

4. 예산수반사항 : 불임2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5. 현행조례 : 불임 3

6.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: 불임 4

7. 입법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8. 11. ~ 2023. 8. 16. (5일간)

【붙임1】 개정 조례안

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의 정수) 안산시 결산검사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. 다만, 안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조(위원의 자격) ① 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상근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4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위원은 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되며,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3조 규정에 따른다.

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

④ 검사 기간 중 선임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(위촉기간)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대표위원) ① 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,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.

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제8조(위원의 직무) 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후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검사협조)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위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동안 일비를 지급한다.
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

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1일 4시간 이상 검사에 참여한 날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검사기간 중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을 포함한다.

제12조(여비의 지급)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제13조(지급기준) 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②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6조 관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1호에 해당액을 지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을 적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최찬규 의원 대표발의 (행정번호 3564)